

의안번호	제11호
의결연월일	2021. 02. 17.

## 논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02월 09일 서원 의원 외 6명
- 나. 회부일자 : 2021년 02월 09일
- 다. 상정일자 : 2021년 02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### 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서원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도로를 점유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는 보도가 점유되는 도로공사,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, 전력 및 통신공사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말함.(안 제3조)
-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(안 제4조, 제5조)
- 보행안전도우미는 교육기관에서 이수증을 교부 받은 사람이어야 함.(안 제6조)
- 임무 및 금지행위(안 제7조, 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 요지 : 생략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